

영등포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57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1992. 2. 24

발의자 : 정종태의원 외6인

1. 주 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조례를 재심사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위원 9명 이내로 영등포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2. 제 안 이 유

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조례의 정비가 요구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것임.

3. 참 고 사 항

영등포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1. 목 적

'91. 4. 15일 구의회 개원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67개 각종 조례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사항을 일제히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을 사전검토, 협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함.

2. 구 성

가. 영등포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는 9명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.

나.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3. 임 무

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폐지할 조례는 폐지하고 개정할 조례는 개정하도록 한다.